

충청북도 농축산사업소조례 심 사 보 고 서

1996. 1. 22.
내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6년 1월 16일

. 회부일자 : 1996년 1월 16일

다. 상정일자 : 제121회 임시회

. 제4차 내무위원회(1996. 1. 22.)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내무국장 최 경 주)

가. 제안이유

- 가축위생시험소, 종축장, 잠업검사소 등 기능이 유사한 사업소를 농축산사업소로 통합 신설하고
- 농산물원종장을 폐지(기능은 농촌진흥원 이관)하여 기능과 인력을 조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가축위생시험소, 종축장, 잠업검사소 폐지
⇒ 농축산사업소로 개편
- 농산물원종장 폐지 ⇒ 농촌진흥원 이관

3. 전문위원 검토요지

(전문위원 오창환)

충청북도 농축산사업소 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현행 사업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의 내용별로 구분 분산되어 사업소로 운영되고 있는 종축장, 잠업검사소, 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하여 그 명칭을 농축산사업소로 개편함과 아울러 그 추진업무의 유사한 기능을 통합운영하고 농산물원종장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운영하고 있는 사업소를 통합하여 농축산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함과 아울러 농축산사업소의 위치를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산70-2번지에 두고 담당업무 및 사무의 관장에 있어서는 가축질병의 방역과 검정, 가축개량 및 보급, 잠업관련 업무등으로 하고 이들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소관사무를 분장하여 지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으로는 현행 가축위생시험소지소로 운영되고 있는 4개지역의 관할지소의 명칭을 농축산사업소지소로 명칭을 변경하여 해당 관할지역 일원에서 발생하는 계분장 업무를 관장하도록 함과 아울러 농산물원종장의 업무는 농촌진흥원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이며 금번 농축산사업소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현행사업소 조례인 충청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조례와 충청북도 종축장 조례, 충청북도 잠업검사소 조례, 그리고 충청북도 농산물원종장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유사기능 업무 및 특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통합 사업소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데 필요한 조치로서 승인하여 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도원안대로 의결(참석 8인, 찬성 8인)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농축산사업소조례